#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73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박 정·문진석·이용우

허 영・박용갑・임오경

김태선 • 어기구 • 김정호

안호영 · 소병훈 · 김성회

의원(12인)

#### 제안이유

2024년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따른 기후물가 상승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로 기후정책전반의 총괄 조정 역할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에 전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후환경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함(안제26조 및 제29조 등).
- 나.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기후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후환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기후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 기후환경부

제40조를 삭제하고,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기후환경부) ① 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

-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는 기후환경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기후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기후환경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기후환경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기후환경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기후환경부장관의 행위 또

는 기후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환경 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기후환 경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기후환경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부장관, 환경부 소속 공무원 또는 환경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환경부, 기후환경부장관, 기후환경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후환경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부총리) ①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을 둔다. -----3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③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교육부장관 및 기후환경부장관 ④・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 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기후환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저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2. (생략)

<신 설>

3. ~ 13. (생략)

#### 14. 환경부

15. ~ 19. (생략)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략)

<u><신 설></u>

| _                             |
|-------------------------------|
| <br>레26조(행정각부) ①              |
|                               |
|                               |
| <br>1.·2. (현행과 같음)            |
|                               |
| 3. 기후환경부<br>4 14 (청체 제2호보다 제1 |
| 4.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         |
| 3호까지와 같음)                     |
| <u>&lt;</u> 삭 제>              |
| 15. ~ 19.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
| 기후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                |
| <u> </u>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세29조(기후환경부) ① 기후환경            |
| 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              |
| 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             |
| 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              |
| 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

|                           | 1                            |
|---------------------------|------------------------------|
|                           | <u> 관장한다.</u>                |
|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
|                           | 기 위하여 기후환경부장관 소              |
|                           | 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
|                           |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
|                           |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
|                           |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
|                           | <u>다.</u>                    |
|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        | 제30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
| 략)                        | 행 제29조와 같음)                  |
| <u>제30조</u> (외교부) (생 략)   | <u>제31조</u> (외교부) (현행 제30조와  |
|                           | 같음)                          |
| <u>제31조</u> (통일부) (생 략)   | <u>제32조</u> (통일부) (현행 제31조와  |
|                           | 같음)                          |
| <u>제32조</u> (법무부) (생 략)   | <u>제33조</u> (법무부) (현행 제32조와  |
|                           | 같음)                          |
| <u>제33조</u> (국방부) (생 략)   | <u>제34조</u> (국방부) (현행 제33조와  |
|                           | 같음)                          |
| <u>제34조</u> (행정안전부) (생 략) | <u>제35조</u> (행정안전부) (현행 제34조 |
|                           | 와 같음)                        |
| <u>제35조</u> (국가보훈부) (생 략) | 제36조(국가보훈부) (현행 제35조         |
|                           | 와 같음)                        |
|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생 략)       | 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제          |
|                           | 36조와 같음)                     |
|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생 략)       |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제          |
| ·                         | · '                          |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생략)

제39조(보건복지부)(생략)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삭 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 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 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 로 기상청을 둔다.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다.

37조와 같음)

제39조(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제 38조와 같음)

제40조(보건복지부) (현행 제39조 와 같음)